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9
----------	-----

2018년 11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8.29. 우형찬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8.10.1.

다. 상정 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8년 11월 1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김포공항은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이 송 처 :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sup>1)</sup>은 김포공항의 운항 편수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선 노선이 이관되면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2003년부터 일본, 중국, 대만을 연결하는 국제선 일부 운항이 시작됨.

<표-1> 김포공항 운영실적

연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ton)
1998	210,011	29,296,342	1,682,445
2000	233,243	36,637,067	2,197,678
2002	128,428	17,092,095	302,240
2004	105,923	14,841,953	297,267
2006	94,943	13,766,523	274,367
2008	108,015	14,264,693	203,977
2010	118,514	17,565,901	226,492
2012	130,269	19,429,224	254,563
2014	138,706	21,566,946	271,990
2015	142,863	23,163,778	271,066
2016	146,266	25,043,088	274,706
2017	145,507	25,101,147	266,427

※ 자료 :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및 여객 화물운송 실적 현황(1998년 ~ 2017년)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고속철도의 운행 등의 영향으로 2006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단거리 국제선 증편과 저가항공사(LCC)의 급성장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 운항, 68, 547명의 승객과 790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이착륙하고 있음.<sup>2)</sup>
- 이와 같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급증에 따라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
-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7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포공항의 경우 공항시설관리자<sup>3)</sup>인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계획수립과 소음대책사업(참고자료.1), 주민지원 사업(참고자료. 2)을 시행하고 있으나,
-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sup>4)</sup>과 공항소음방지중기계획,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어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임.

2) 한국공항공사 공항통계(<https://www.airport.co.kr/www/extra/stats/airportStats/layOut.do?menuId=397>)

3)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항소음방지법」 제 2조제5호.)

4) 「항공사업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 발표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년~2019년)에 따르면 수도권 항공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김포 국제공항을 비즈니스항공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동북아 중소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국제선 기능 확대 추진 등을 담고 있음(참고자료.3)

-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자료와 법적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음대책과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 실질적인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기획경제위원회), 생활환경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환경수자원위원회),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조(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방안에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sup>5)</sup>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 교통위원회는 항공기 증편 운영에 따른 영업 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돌아가고 있음에도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보상 및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5).

5)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 부대의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29
----------	-----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29일

발 의 자 : 우형찬, 성흠제, 김평남, 김제리,  
신정호, 박상구, 박기열, 문영민,  
황규복, 김희걸, 경만선, 성중기,  
장인홍, 이태성, 채인묵, 김정태  
의원(16명)

##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김포공항은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항공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이 일괄 이관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2003년 11월 서울(김포)~도쿄(하네다) 노선 취항으로 국제선 기능이 부활한 이후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까지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항공기 증편 운영에 따른 영업 이익은 한국항공공사에 돌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공사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개선 의지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와 보상 대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항공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8.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